

창원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가단86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이경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수하

변론 종결 2020. 12. 11

판결 선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김해시 C 임야 6420 m²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1981 . 8. 18. 접수 제 385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9 . 9. 16. 접수 제827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 김해시 C 임야 6420 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증조부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다가, 1981. 8. 18. 피고의 부친인 E 앞으로 1968. 7. 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9. 9. 16. 피고 앞으로 2019. 3.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자신의 조부 F, 부친 G으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상속되었는데, 원고의 부친 이병이 들어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부친 E이 원고 부친 G이 납부한 세금 납부영수증 일부와 인감도장을 훔쳐간 후인 감증명서 기타 일체를 위조하여 원고의 증조부 D로부터 자신이 증여받은 것처럼 불법적으로 소유권이 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부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 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E 과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반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 19571판결 등 참조) 망 E명의 등기는 당시 시행되었던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법률 제3159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반복될만한 사정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수정